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이용약관서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의 학교급식재료 및 학교급식식재료 구매대금 지급을 통한 협력기업 금융지원 용)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본인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의 구매대금 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채무인수 하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전자방식으로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채권대금을 결제 받음에 있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금융결제원의 「B2B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구매기업"이라 함은 협력기업으로부터 급식재료 또는 급식식재료(이하 "물품 등"이라 합니다)를 구매하는 학교로서, 공사가 면책적으로 채무인수 한 구매대금 지급채무의 채무자인 기업을 말합니다.
- ②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라 합니다)"라 함은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 등의 구매대금 지급채무 일체를 구매기업으로부터 면책적으로 채무인수하고, 외상매출채권의 변제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③ "협력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거래기업 중 구매기업의 지급채무를 면책적인 방법으로 채무인수 함으로써 외상매출채권의 변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공사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직접 받는 판매기업(1차 협력기업)과 공사로부터 받은 채권을 근거로 하여 1차이하 협력기업이 발행하는 상생매출채권을 받는 2차~4차 협력기업을 포함하여 말합니다.
- ④ "MP(Market Place)"라 함은 은행과 별도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협력기업간 납품정보 및 결제정보 등을 중계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인터넷사이트 또는 동 사업자를 말하며, 협력기업은 공사 또는 상위 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MP사이트에서 상생매출채권의 발행, 취소, 조회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공사는 MP사이트에서 발행채권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 (입금계좌 지정)

외상매출채권 만기결제 대금의 입금을 위한 약정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중 다음의 계좌로 합니다.

예금주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비 고
			법인의 본지사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제3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결제)

공사가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입금한 외상매출채권의 결제대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니다.

- ① 결제대금이 당일 결제할 외상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모든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취급분을 우선 상환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 공사와 은행이 체결한 업무협약서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처리하거나 공사의 지시를 받아 처리합니다.
- ② 외상매출채권 대금의 만기결제는 공사가 해당 채권대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만 결제되며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사가 해당 채권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외상매출채권 대금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 은행은 본인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4조 (정보제공의 동의)

이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MP 또는 공사 및 MP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하기로 합니다.

- ① 공사에게는 협력기업 본인에 관한 약정정보, 사업자정보 및 외상매출채권 내역 등을 제공합니다.
- ② MP에게는 공사 또는 협력기업 본인에 관한 약정정보, 사업자정보 및 외상매출채권 내역 등을 제공합니다.

제5조 (면책)

- ① 제출서류의 허위, 위변조,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 ② 이 약정서의 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6조 (약정의 효력)

- ① 이 약정,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이 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전자금융



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업무규약」 및 「등 시행세칙」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② 본인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본인이 해지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채권의 실제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이 약정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년 월 일

본 인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본인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본인

(인)

